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다우기술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다우기술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(1) 위원회는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정거래법”이라 한다)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(다만, 경영을 지배하려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, 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(이하 “내부거래”라 한다)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.
- (3)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(1)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(2)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(3)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

제5조 (위원장)

- (1)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(2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(3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(4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(이하 “직무대행자”라 한다)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개최시기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- (1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5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2)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(1)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(1) 위원회의 내부거래에 관한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. (단,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외)
- (2) 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거래
- (3) 기타 내부거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(1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사에 대한 통지)

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이사회회의 재의결)

제11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

- (1)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5조 (간사)

- (1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(2)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19.04.30.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